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원  
강남구세무서장  
후납증인 2011년 9호

# 건설장비/상용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품명:  클래식  상환유예  거치클래식  거치상환유예  
계약 번호: \_\_\_\_\_

할부금융이용자	성명/법인명	주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직장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	-		
	직장 주소			휴대폰	-	-		
	기타 주소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E-mail		청구서	<input type="checkbox"/> 미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발송		
연대보증인 1 공동계약자	공동계약자여부	본인은 할부금융이용자와 공동계약자임을 확인합니다. (인) (공동계약자일 경우에만 인감날인)						
	성명/법인명	주인(법인)등록번호	-	할부금융이용자와의관계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직장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	-		
	직장 주소			휴대폰	-	-		
	기타 주소		E-mail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증채무한도	할부금융자금의 ( )% 상당액 (당사에 이미 보증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됨)			보증기간	개월			
연대보증인 2	성명/법인명	주인(법인)등록번호	-	할부금융이용자와의관계				
	자택 주소			자택 전화	-	-		
	직장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	-		
	직장 주소			휴대폰	-	-		
	기타 주소		E-mail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증채무한도	할부금융자금의 ( )% 상당액 (당사에 이미 보증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됨)			보증기간	개월		
차량	차종	( )년식		최초등록일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차 / 중고차	<input type="checkbox"/> 신차 <input type="checkbox"/> 중고차		
할부조건	차량가격	원	등록비용	원	차량인도(예정)일	년	월	일
	선납금	원	할부금융자금	원	할부기간	개월		
납부조건	회차	월 할부금	상환 대상 원금	할부 시작일	년	월	일	
	(1)회~( )회	결제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자 금액 변동으로, 1회차 월할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 만료일	년	월	일	
	( )회~( )회	원	원	← 이자율	연이자율( )%			
	4회시 추가납부	원 (□부가세 거치금액)	좌	동	실제 연간 요율	연이자율( )%		
	만기시 추가납부	원 (□상환 유예 원금)	좌	동	지연배상금율	연이자율(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후납 원리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전액/일부)		할부금(총납부금액)	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 )개월 이내 상환 시 대출일로부터 ( )개월 초과 ( )개월 이내 상환 시 대출일로부터 ( )개월 초과 후 상환 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순위:1 순위 금액: 원	: 미도래할부금융자금의 ( )% : 미도래할부금융자금의 ( )% : 미도래할부금융자금의 ( )%				
자동이체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초회납입일	년	월	일
	예금주	(인)	예금주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뒷장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할부금융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여신거래 기본 약관 및 할부금융약관서와 해당상품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거래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우편으로 제공되는 핵심설명서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할부금융이용자

(인)

연대보증인 1 또는 공동계약자

(인)

연대보증인 2

(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www.vwfs.co.kr



매도인	딜러명/전시장	주소	
	판매 담당자	(인) 주민번호	- 연락처
	금융 담당자	(인) 주민번호	- 연락처
상기 내역이 사실임과 담당자의 입회 하에 할부금융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자필서명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할부금융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약관 신고 수리 일자: 2014.01.29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제 3 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동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 제 4 조 (거래조건외의 주의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 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선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 제 5 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취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 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6 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7 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일로부터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 항 이외에 제 6 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 9 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8 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제 10 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 2 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 11 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 제 12 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 제 13 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제 14 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산사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다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 1 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

### 자동이체 약관

1.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월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도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2 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정보,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이동통신사, 전화(TM) 수신여부, 휴대폰(SMS) 수신여부, 우편물(DM) 수신여부
  -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보험계약 정보 등 상거래 관련 정보
  - 신용도 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기타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공기관보유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 등 법원의 재판, 결정 정보/각종 체납 정보)
  -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신용등급, 평점정보, 타 기관의 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정보 등)
- 조회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판단, 사후관리 등
- 조회동의 효력 기간
  - 본인이 본 동의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모든 채무상환 완료)시까지 상기 동意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意的 효력은 소멸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조회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처리, 민원처리 등
    -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신용관련 분석을 위한 자료 활용 등
    - 귀사가 본인의 음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상담 또는 새로운 상거래 신청 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이용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보유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 대출 세부내역, 본인의 보유차량에 관한 정보, 가족 등 관련된 정보, 자체 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 평가내용
    -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의 가입, 유지, 이행, 관리에 필요한 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수집, 이용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선택적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와 고객 편의를 위한 사은행사, 판촉행사, SMS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등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상기 1 에서 정하는 필수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수집, 이용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 및 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및 33 조, 34 조에 따라 제 3 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공공기관보유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 제공, 이용기간, 계약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주식회사, 만 트럭버스 코리아(주), ㈜참존오토, ㈜참존 오토모티브, 차량 매도인(딜러사, 영업사원), 클라세오트주식회사, 마이스터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우토반바이에이지, ㈜지오하우스, 유카로오토모빌(주), 지엔비오토모빌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젠펠터스, ㈜아우토플라츠, 지에스 엠비즈 주식회사, 고진모터스(주), 위본모터스(주), ㈜태안모터스, ㈜참존모터스, (유)중산모터스, 주식회사 한서모터스, ㈜세양물류 중고차사업부, ㈜위본 중고차 사업부, 만트럭서경판매 주식회사, 이글 인터내셔널, VTK 서울지역부, 주식회사 동호물류, 제이엠 모터스, ㈜만트럭 부산경남, 이앤조 트럭 경남, 이앤조 트럭 울산, ㈜타이포스, 만트럭전남지점, 천지상용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주) IBK 시스템, 가인정보처리(주), LG CNS, 로시스,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 화인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한강,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올콘, 함양군청, 삼성에스엔에스주식회사, 삼성로지스틱스주식회사, 메리츠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GS 칼텍스주식회사, 법무법인 양한, 보협회사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보유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수집, 이용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주식회사, 만 트럭버스 코리아(주), ㈜참존오토, ㈜참존 오토모티브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와 고객 편의를 위한 사은행사, 판촉행사, SMS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보유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보증인 제시에 관한 사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8 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1 또는 공동계약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2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	------	------	-------------------------

설정 대상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	---

저당권자	성명(명칭) <b>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b> 주소 <b>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b>
------	--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	--------------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	--------------

설정 금액	<input type="checkbox"/> 채권액 <input type="checkbox"/> 채권최고액 <input type="checkbox"/> 담보가액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 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 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

## 위임장

수 임 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 자동차의 근저당권(설정, 말소)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상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성명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인)



**채 무 자** 주소 :  
상호 :  
성명 : \_\_\_\_\_ (인)

**근저당권 설정인** 주소 :  
상호 :  
성명 : \_\_\_\_\_ (인)

**신 청 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상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성명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인)



### [목 록]

자동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 건설장비/상용차/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채무자** : 성명: \_\_\_\_\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주소: \_\_\_\_\_

**근저당권 설정인** : 성명: \_\_\_\_\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주소: \_\_\_\_\_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혹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_\_\_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 포함)
- ②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중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담보보존의무**

-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 3 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 3 조 담보가치유지**

본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저당물건의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 손실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채무자는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 ①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할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 등은 일체 회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③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5 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 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 ③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 ④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태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①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성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사업자등록번호: 104-86-29244



\_\_\_\_\_년 \_\_\_\_\_월 \_\_\_\_\_일

**채무자** : 주소: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신청번호:

## 건설장비/상용차/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채무자** : 성명: \_\_\_\_\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주소: \_\_\_\_\_

**근저당권 설정인** : 성명: \_\_\_\_\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주소: \_\_\_\_\_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④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혹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_\_\_\_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 포함)

⑤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중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⑥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 제 2 조 담보보존의무

④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⑦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본 조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 3 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 제 3 조 담보가치유지

본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저당물건의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 손실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채무자는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4 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④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할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⑥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일체 회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⑦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 5 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④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⑦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⑧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 제 6 조 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태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7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④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 저당물건의 등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성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사업자등록번호: 104-86-29244



\_\_\_\_년 \_\_\_\_월 \_\_\_\_일

**채무자** : 주소: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신청번호:

## 건설장비/상용차/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채무자** : **성명:** \_\_\_\_\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주소:** \_\_\_\_\_

**근저당권 설정인** : **성명:** \_\_\_\_\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주소:** \_\_\_\_\_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⑦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암을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_\_\_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 포함)

⑧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중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⑨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 제 2 조 담보보존의무

⑩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⑪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⑫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본 조 제 3 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 3 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 제 3 조 담보가치유지

본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저당물건의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 손실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채무자는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4 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⑭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할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⑮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일체 회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⑯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⑰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 5 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⑱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⑲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⑳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㉑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 제 6 조 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태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7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㉒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㉓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 저당물건의 등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 층 (청담동, 신영빌딩)  
 성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사업자등록번호: 104-86-29244



\_\_\_\_\_년 \_\_\_\_\_월 \_\_\_\_\_일

**채무자** : 주소: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신청번호:

## 공 증 위 임 장

<b>수임인 (대리인)</b>	주 소			
	성 명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 에서 공증인법 제 56 조의 2 (어음 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각 1 통				
<b>액 면</b>	원정	<b>수취인</b>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b>발행일</b>	<b>지급기일</b>	일 램 출 급	<b>발행인</b>	
<b>발행지</b>	서울특별시	<b>지급지</b>	서울특별시	<b>지급장소</b> 서울특별시
년    월    일				
<b>위임인</b>	주소		주소	
	성명	인감(印)	성명	인감(印)
<b>위임인</b>	주소		주소	
	성명	인감(印)	성명	인감(印)

## 약 속 어 음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금 \_\_\_\_\_ 원정  
 ₩ \_\_\_\_\_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b>발행일</b>	년    월    일
<b>지급기일</b>	일 램 출 급
<b>발행지</b>	서울특별시
<b>지급지</b>	서울특별시
<b>지급장소</b>	서울특별시

주 소 \_\_\_\_\_  
**발행인** \_\_\_\_\_ 인감(印)

##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 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업체)와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899.3490

❖제한: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협회·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연락처: ☎1899.34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여신금융협회 개인정보 보호인 연락처 : ☎(02)2011.0728,0745 / 서울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민원실 국번 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vwfs.co.kr)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http://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본사 또는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 조의 2)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고객은 신용정보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 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redit.co.kr](http://www.nice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http://www.kcb4u.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577-1006 인터넷 [www.sci.co.kr](http://www.sci.co.kr)